

총 무 체



국무총리지시 제 1호 (720-2064)

1990. 3. 9.

수신 수신처 참조 (국무총리실)

제목 '90년도 행정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지시

1. 정부는 그동안 행정의 민주화와 경제·사회의 공정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년 들어 우리가 처한 행정환경은 그 변화의 폭이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분출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여건과 미래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각종 법령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2. 이를 위하여 정부는

첫째, 환경보전, 식품위생 등 새로운 국민생활욕구를 총족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양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둘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증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째, 각종 행정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하여 민간의 자율성 및 창의성 신장을 도모함과 아울러,

네째, 국제화·지방화·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함으로써 국가발전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금년도 제도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90년도 행정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제도개선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각 부처는 국민 각계 각종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행정기관 상호간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개선이 완료된 과제의 법령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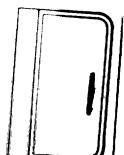
나. 개선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국민에게는 개선취지와 내용을 광범위하게 홍보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에게는 세부업무처리지침을 주지 시켜 개선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다. 아울러, 각 부처는 이미 확정된 과제 이외에도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제도개선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총무처장관은 각 부처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개선작업을 총괄하면서 수시로 개선된 제도의 이행실태를 확인·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90년도 행정제도개선 추진지침 1부. 끝.

국 총 리

수신처 : 가(10-15, 18-42, 44-51), 나(01)



1990 年度

行政制度改善 推進指針

1990. 3.

總務處

目 次

I.	基本目標 및 改善方向	3
1.	基本目標	3
2.	改善方向	3
II.	'90年度 推進計劃	4
1.	課題選定	4
2.	課題推進	5
3.	法令措置 및 弘報	5
4.	事後管理	6
5.	部處別 課題 現況	7
III.	行政事項	9
1.	制度改善 作業日程	9
2.	制度改善 推進	9
3.	制度改善 推進狀況 報告	10
4.	制度改善과 提案制度 외의 連繫	11
5.	制度改善業務 有功者 表彰	11
6.	制度改善作業 推進上의 留意事項	12
IV.	'90年度 部處別 行政制度改善 課題	19

I . 基本目標 및 改善方向

1. 基本目標

民主化, 自律化, 地方化, 國際化, 情報化 등 '90년대 行政環境의 變化에
對應하여 각종 行政制度를 改善함으로써 公正하고 均衡있는 國家發展 支援

2. 改善方向

- 國民生活의 質的向上을 위한 制度改善
 - . 交通難解消, 環境保全, 食品衛生 등 새로운 國民生活欲求의 充足
- 分配正義의 實現과 社會의 衡平增進을 위한 制度改善
 - . 低所得層 및 脆弱階層에 대한 支援 強化
 - . 國民의 生活安定을 위한 社會福祉制度의 擴大
- 自律化, 國際化, 情報化時代에 對應하기 위한 制度改善
 - . 民間의 自律性과 創意性伸張을 위한 行政規制 缓和
 - . 國際化 및 情報化에 對應한 行政制度의 整備
-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制度改善
 - .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國家機能의 地方移讓 擴大
 - . 地域間 均衡發展을 위한 制度의 整備

II. '90年度 推進計劃

1. 課題選定

○ 選定對象

- 6大政策 및 5大當面課題와의 連繫 推進 —
- 國民生活과 직접 관련되어 不便을 주는 制度
 - 交通, 住宅, 土地, 金融, 教育, 上.下水道, 環境污染, 衛生問題 등
- 脆弱階層에 대한 支援制度
 - 老人福祉, 障碍者福祉, 國民保健, 醫療保障, 각종 生活安定 制度 등
- 地域間.階層間 均衡發展을 위한 制度
 - 農.漁民 支援, 中小企業 活性化 및 分配의 不均衡 是正 등
- 社會安定을 위한 制度
 - 青少年保護, 人身賣買 등 각종 犯罪豫防, 有害食品團束, 過消費 防止 등
- 行政의 民主化.自律化를 위한 制度
 - 行政節次의 民主性 確保, 行政權限의 委任.委託, 行政規制의 廢止.緩和.簡素化 등

○ 選定節次

- 改善候補課題 發掘 : 各部處, 總務處
 - 國民 각계각층의 多樣한 輿論 收斂
 - 關係部處間 有機的인 協議·調整
- 審議·調整·確定 : 制度改善委員會

2. 課題推進

- 選定된 課題는 各部處 '90年度 主要業務計劃에 反映, 推進
- 改善案은 각계 專門家, 利害當事者의 광범한 輿論 收斂,反映
- 改善案 및 關係法令 確定時에는 반드시 制度改善委員會의 審議, 議決을 거쳐 確定
- 일부 移越課題의 早速한 完決 推進
- 課題別 推進狀況(分期別) 管理 徹底(Ⅲ. 行政事項 참조)

3. 法令措置 및 弘報

- 制度改善에 따른 早速한 法令化 措置
 - 各 部處 長官責任下에 當該年度內 推進
 - 法律 改正事項은 '90年度 立法推進計劃(法制處)에 反映 推進 및 臨時國會 最大 活用
- 對國民 弘報 實施
 - 改善된 制度의 早速한 定着을 위한 弘報 強化
 - 各種 報道媒體를 통한 制度改善 弘報의 持續的 實施
 - 官報, 班常會報 등의 적극 活用

4. 事後管理

o 一線機關에 대한 細部業務處理指針 通報

- 改善案 確定施行과 同時に 一線機關에 指針通報로 執行의 實效性 圖謀
- 改善된 制度의 趨旨, 改善內容, 業務處理 要領(變更된 書式, 變更된 處理節次) 등 포함.

o 改善制度의 履行實態 指導.點檢 強化

- 各部處 : 自體監查를 통한 연중 지속적인 指導.點檢
- 總務處 : 年2回 履行實態 確認.點檢
- 確認方法 : 市.道別로 確認班을 編成하여 一線 行政機關의
履行實態 現場點檢
- 措置計劃
- 改善制度의 施行上 問題點 및 副作用 把握
- 未洽하고 補完을 要하는 부분에 대한 補完措置

5. 部處別 課題 現況

部處名	課題名	課題數
計		128
經濟企劃院	○ 韓國標準產業分類制度 改善 등	2
調達廳	○ 政府物品分類制度 改善 등	2
國土統一院	○ 南北人的往來 承認申請書類 減縮 등	2
總務處	○ 階級別 待遇制度 導入 등	6
科學技術處	○ 產業技術 研究組合의 設立節次 簡素化 등	4
環境處	○ 環境污染으로 인한 被害救濟制度 改善 등	3
國家報動處	○ 住宅支援制度 改善 등	3
外務部	○ 在外公務員 服務規程 改正	1
內務部	○ 住民登錄證 發給申請書 引繼節次 改善 등	6
財務部	○ 換率算定方式의 改善 등	3
國稅廳	○ 非課稅 證明提出 簡素化 등	7
關稅廳	○ 關稅還給用 所要量證明 徵求制度 改善 등	4
法務部	○ 治療監護所 外來診療制 導入 등	3
國防部	○ 軍用施設用地 取得節次 改善 등	2
兵務廳	○ 在學生入營延期制度 改善	1
文教部	○ 公共圖書館 業務管理機能 一元化 등	3

部處名	課題名	課題數
文化部	○ 公演場設置許可要件 強化	1
體育部	○ 社會體育指導者 養成制度 改善 等	5
農林水產部	○ 不實管理草地整備制度 改善 等	6
農村振興廳	○ 生物學的 製材 動物藥品 檢定制度 改善	1
山林廳	○ 農作物 被害 立木 伐採制度 改善 等	5
水產廳	○ 共同漁業權 管理制度 改善 等	5
商工部	○ 甲類貿易代理業 登錄制度 改善 等	6
工業振興廳	○ 電氣用品 製造業 許可 及 型式承認制度 改善	1
特許廳	○ 商標登錄出願의 公開制度 改善	1
動力資源部	○ 海外資源 開發事業 許可節次 改善 等	3
建設部	○ 都市公園管理制度 改善 等	4
保健社會部	○ 醫療保護手帖 發給節次 改善 等	6
勞動部	○ 產災保險 事務組合制度 改善 等	3
交通部	○ 移徙貨物 運送制度 改善 等	9
鐵道廳	○ 乘車券 賣制度 改善 等	5
海運港灣廳	○ 海上運送事業 讓渡讓受制度 改善 等	6
遞信部	○ 第3種 郵便物 見本提出制度 改善 等	4
서울특별시	○ 住民登錄 新規登錄制度 改善 等	5

III. 行政事項

1. 制度改善 作業 日程

區 分	日 程
○ 改善課題 選定	○ '90. 1 - 2
○ 改善案 確定 · 改善試案 作成 · 關聯機關 協議 · 制度改善委員會・國務會議 上程, 審議, 確定	○ '90. 3 - 8
○ 關聯法令 整備	○ '90. 3 - 10

2. 制度改善 推進

- 改善課題 確定 : '90年度 第1回 制度改善委員會 ('90. 2. 28)
- 改善案 確定 : 關聯機關 協議, 輿論收斂 및 制度改善委員 意見反映 後 確定
- 制度改善委員會 上程
 - 上程案件은 國務會議 上程案件에 準하여 作成하되 A4 크기로 作成
 - 上程案件 9部를 總務處에 提出
 - 制度改善委員會에서 審議, 確定 (分期別 1回 開催)

* '90年度부터 主要政策課題와 一般課題의 區分을 廢止함에 따라
原則的으로 모든 課題가 制度改善委員會 上程案件이 됨.
다만, 부득이한 事由로 上程이 不可能할 경우, 事前에 制度改善委員會
小委員會 開催要請 또는 部處別로 관련 制度改善委員 意見反映

○ 國務會議 上程

· 國務會議 上程案件은 各部處에서 準備하되 制度改善委員會 審議結果를
反映하여 上程

○ 各 部處別로 改善案 確定, 施行 및 法令整備 推進

○ 改善(案)을 確定, 施行한 課題는 主要改善內容 및 관계 措置事項을 別添書式
'다'에 依據 作成, 通報

3. 制度改善 推進狀況 報告

가. 對象機關

○ 各院, 部, 處, 廳, 서울특별시

나. 分期別 推進狀況 報告

○ 各 中央行政機關長 및 서울특별시장은 每分期 翌月 5日까지 總務處에
推進狀況 提出

○ 報告事項

· 改善中인 課題

- '90年度 制度改善課題 推進狀況 (書式 "가")

- 部處別 法令整備 推進狀況 (書式 "나")

· 改善完了된 課題

- 制度改善完了課題 結果通報 (書式 "다")

※ '90年度 1/4分期 推進實績을 4月 30일까지 報告 (書式 "가")

4. 制度改善과 提案制度와의 連繫

가. 目的

職務提案으로 適用可能한 優秀改善課題를 選定, 採擇하여 포상을
實施함으로써 制度改善作業의 活性化 促進

나. 推薦範圍

- 制度改善 課題로 推進 實施하여 改善完了된 各部處 課題中에서 選定
- 行政能率의 向上, 豽算節減 등 改善효과가 큰 課題는 公務員 提案制度에
의한 褒賞 實施

5. 制度改善業務 有功者 表彰

가. 目的

公正, 均衡發展을 위한 制度改善에 寄與한 공이 큰 有功者들을 表彰함으로써
制度改善業務의 活性化를 기하고, 擔當公務員의 士氣를 昂揚

나. 表彰內容

- 表彰對象者 : 各 中央行政機關 및 市, 道 制度改善業務擔當
5級以下 公務員
- 表彰人員 : 10名 以內
- 表彰區分 : 國務總理表彰 3名
總務處長官表彰 7名

6. 制度改善作業推進上의 留意事項

가. 改善作業의 懷重한 마무리

- 有關機關間 充分한 協議.調整을 거쳐 改善作業 推進
- 關聯機關은 制度改善案을 訊速하고 誠實하게 協議.調整
- 各界 專門家등의 폭넓은 參與를 誘導하고 充分한 研究.檢討를 거쳐
懷重하게 改善案 確定

나. 改善作業의 管理徹底

- 課題別로 "카드화" 또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改善作業의 效率的 管理
※ "카드" 書式은 既存書式에 의함.
데이터의 様式 또한 既存 "카드"의 様式과 同一
- 定期的으로 推進狀況 自體點檢.確認 實施

< 서식 가 >

제 도 개 선 과 제 추 진 상 황

과 제 명 :

(주 관 부서 : 국 과)

(완료 예정 : '90.)

개 선 방 향	세 부 추 진 일 정
---------	-------------

분 기 중 추 진 실 적	부 진 사 유 및 대 책
---------------	---------------

* (작성요령 : 뒷면 참조)

<작성요령>

1. 개선방향 : 주요개선방향을 항목별로 약술
2. 세부추진일정 :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입안, 관련기관협의, 제도개선위원회 상정, 국무회의 상정 등) 을 기입
3. 분기중 추진실적 : 분기중 추진실적을 개조식으로 기재
4. 부진사유 및 대책 :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재

< 서식 나 >

법령정비추진현황

과제명 : (년도과제) 주관부서 : 국과

(완료예정 : '98.)

법령명	개정요지	추진일정					추진상황	
		입안	협의	국무회의	국회	시행	실적	일자

부진사유 및 대책

* (작성요령 : 뒷면참조)

< 작성요령 >

1. 법령명 : 법률, 대통령령, 부령, 기타의 순으로 작성
2. 개정요지 : 개선안을 항목별로 작성하되 추진상황이 다를 경우 항목을 분리 기재
3. 추진일정 : 법령정비 작업의 완결계획을 분기별로 기재
4. 추진상황 : 입안,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법제처제출 및 심의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통과, 대통령결재, 국회상정·통과, 공포, 시행등을 일자와 함께 기입

< 서식 다 >

제도개선완료과제 결과통보

과 제 명 :

(주 관 부 서 :

국 과)

(개선목적)

(개선내용)

(법령정비사항)

(추진상황)

* (작성요령 : 뒷면참조)

< 작성요령 >

1. 서식 작성목적 : 정부의 행정제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부처별 개선완료 과제의 주요개선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국민·관련기관 및 단체와 일선행정기관에 홍보하여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시행되도록 하기 위함.
 2. 서식 작성방법 : '90년도 각 부처별 추진과제중 개선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 추진상황을 개조식으로 작성
- 개선목적 : 과제의 선정배경·개선에 따른 대국민 파급효과등을 중심으로 기술
 - 개선내용 : 주요개선내용을 항목별로 현행제도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 법령정비사항 : 개선내용 시행을 위해 정비한 법령 개·폐사항의 내용 및 조항을 (신·구조문 대비) 기재
 - 추진상황 : 개선시안 확정, 관계부처협의,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청취,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관계법령개정 등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재

N. '90年度 部處別 行政制度改善 課題

部處別 目次

1. 경제기획원	23
2. 조달청	26
3. 국토통일원	29
4. 총무처	31
5. 과학기술처	37
6. 환경처	42
7. 국가보훈처	45
8. 외무부	48
9. 내무부	49
10. 재무부	55
11. 국세청	60
12. 관세청	67
13. 법무부	72
14. 국방부	75
15. 병무청	77
16. 문교부	78

17. 문화부	84
18. 체육부	86
19. 농림수산부	92
20. 농촌진흥청	98
21. 산림청	99
22. 수산청	104
23. 상공부	112
24. 공업진흥청	121
25. 특허청	122
26. 동력자원부	123
27. 건설부	127
28. 보건사회부	131
29. 노동부	138
30. 교통부	145
31. 철도청	155
32. 해운항만청	162
33. 체신부	167
34. 서울특별시	171

경 제 기 획 원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1. 한국표준 산업분류 제도 개선	<p style="text-align: left;">〈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거 각 종 통계자료의 국내외 상호비교성과 시계열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1963년에 제정하여 각급 통계작성기관에서 활용해오고 있음. ○ 동 산업분류는 1968년에 개정된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Rev.2)의 체계를 원칙적으로 따르고 5 자리 이하 분류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 5차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1984.1.26 개정한 이래 지금 까지 사용해오고 있음. ○ 동 산업분류는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법 제 11 조 ○ 경제기획원고시 제 71 호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3 차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권고안이 접수되는 즉시 구체적인 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계획을 수립 • 추진하여 1990년도에 제 6 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고시 예정																
2. 국가기본통계기능의 체계화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통계작성 현황 <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작성기관수</th><th>통 계 수</th></tr></thead><tbody><tr><td>중앙행정기관</td><td>26</td><td>228</td></tr><tr><td>지방행정기관</td><td>15</td><td>8</td></tr><tr><td>공공·민간</td><td>45</td><td>108</td></tr><tr><td>계</td><td>86</td><td>344</td></tr></tbody></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지역적 균형발전의 정책전환 및 국민복지의 향상증진에 따라 새로운 통계수요 급증○ 통계업무에 대한 경시풍조의 일반화	구 분	작성기관수	통 계 수	중앙행정기관	26	228	지방행정기관	15	8	공공·민간	45	108	계	86	344	○ 정부조직법
구 분	작성기관수	통 계 수															
중앙행정기관	26	228															
지방행정기관	15	8															
공공·민간	45	108															
계	86	344															

- 통계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전문인력 부족

<개선방향>

- 조사통계국의 통계청으로의 승격
- 통계전문인력 양성 방안 강구
 - 통계연수원 설치

조 달 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1. 선물거래 대상품목 획대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 관리규정 및 동규칙에 의거 선물거래 대상품목이 22개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음. ※ 거래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물류 (13) : 소맥, 옥수수, 대두, 대두유, 대두박, 커피, 원당, 코코아, 원면, 생고무, 원목, 팜유, 원모 • 귀금속 (2) : 금, 은 • 비철금속 (6) : 전기동, 연, 아연, 알루미늄, 니켈, 주석 • 기타 (1) : 유류 ○ 선물거래 대상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 기업의 대응이 어려운 상태임.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유화 추세에 부응하여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 관리규정 및 동규칙에 의거 선물거래 대상품목이 22개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음. ※ 거래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물류 (13) : 소맥, 옥수수, 대두, 대두유, 대두박, 커피, 원당, 코코아, 원면, 생고무, 원목, 팜유, 원모 • 귀금속 (2) : 금, 은 • 비철금속 (6) : 전기동, 연, 아연, 알루미늄, 니켈, 주석 • 기타 (1) : 유류 ○ 선물거래 대상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 기업의 대응이 어려운 상태임.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유화 추세에 부응하여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고 <p>(조달청 훈령)</p>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
물거래 대상품목을 세계상품거래소
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품목
으로 확대

- | | | |
|------------------------|---|----------------------------|
| 2. 정부물품분
류제도의
개선 | 〈실태〉 | |
| | ○ 정부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식별, 물품분류번호 부여 | ○ 물품관리
법 제 5 조 |
| | • 분류방법
— 군급, 품명, 규격순으로 분류
— 하나의 규격에 하나의 정부물
품번호 부여
— 품명 및 규격분류는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 | ○ 동법시행
령 제 3,4
조 |
| | • 분류주체
— 군급 및 품명분류 : 조달청장
— 규격분류 : 각 중앙판서장

(조달청장과 협의) | ○ 동법시행
규칙 제 5,
6,7 조 |
| | ○ 품명 또는 규격의 분류기준 미비 | |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관리상 정보제공기능 미약○ 미분류물품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요청 없을시 분류 불가능○ 다원화된 물품분류체계 운영으로 사용상 혼란과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 낭비<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물품분류제도 : 4 - 3 - 4 체제• 국방보급목록제도 : 4 - 2 - 7 체제• 기타 독립체제 수립기관 :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연방목록제도를 도입하여 통일된 국가목록제도로 전환하는 기반 구축<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단계별 업무 추진계획 수립• 법제화에 따른 관련법규 검토 및 법령초안 작성• 관련 서식 · 절차등 관련규정안 수립• 국가목록제도의 타당성 홍보	

국 토 통 일 원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1. 남북 인적 왕래 승인 신청 서류 감축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방문 승인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대통령 특별지시 제 1호, '89.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방문승인신청서 • 신원진술서 • 초청장 또는 방문자의 신변안전, 무사귀환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비서류중 초청장 등은 사실상 획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북한방문 기회가 거의 막혀 있음.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왕래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산가족에게는 초청장 등을 필요 한 구비서류로 요구하지 아니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 동법시행령에 해당사항 규정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계법령
2. 남북협력사업 업 승인절차 차 간소화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절차 (대통령 특별지시 제1호, '89.6.12)<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업 사전 승인 → 접촉 승인 → 협력사업 시행 승인○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각 단계별로 승인 내용이 중복되거나 구별이 모호하여 실효성이 적고 통제적 인상이 강함 <p>〈개선방향〉</p> <p>남북협력사업의 승인절차 간소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협력사업 사전승인” 절차 생략- 협력사업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승인” 신청시 협의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p>*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 제정시 동법시행령에 해당사항 규정</p>	

총 무 처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1. 계급별 대우 제도 도입	<p style="text-align: center;"><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정책현상의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년대의 잔소한 정부구현 시책 및 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등 직업공무원제 발전에 따른 이직률 감소등으로 인사정책 심화. ○ 동일계급 장기근속자 파다로 공직 사회 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을 위한 능력과 실적이 있음에도 승진기회가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급별 대우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요건 : 승진소요 최저년수 이상 일정기간을 동일계급으로 장기근속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임용령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요건 :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 구체적인 대상, 요건 등은 총무처예규로 규정 • 선발절차 : 임용권자 (5 급이하 대우) 및 임용제청권자 (4 급이상 대우) • 처우 :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한 대우수당 지급 ※ 구체적인 수당지급액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규정 • 명칭 : 대우공무원 (예시 : 서기관대우, 행정주사대우) 	
2. 별정직공무원 근무년 한제도 확대	<p>〈 실 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 미비 • 비상계획, 학생군사교육, 대학직장 예비군등 일부 직무분야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만 근무상한연령을 설정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대통령령)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총무처예규)

- 근무상한 연령이 설정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연한 불명확
- 정년제도를 적용받는 일반직공무원 보다 장기근속하는 사례 발생

〈개선방향〉

- 모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 규정
 - 일반직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규정
 - 5급상당이상 : 61세
 - 6급상당이하 : 58세
 - 특수직종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 범위내에서 임기·근무년한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함

3.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 확대

〈실태〉

- 민주화·자율화시대에 부응하여 행정권한의 민간이양을 대폭 확대
-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중앙기획과 지방집행의 역할분담체계 정립

○ 행정권한

의 위임 및

위탁에 관

한 규정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일선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인식부족 - 각급 기관간의 협조미흡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집행업무를 과감히 지방행정기관에 위임 ○ 행정규제의 폐지·완화 및 민간 위탁 확대 ○ 비권력적 관리기능의 민간위탁 확대 	
4.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직제통합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로 직제가 세분화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제수 : 총 180 개 직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 39 개 - 소속기관 : 141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조직과정 원에 관한 통칙 • 개별직제

- 단위기관별 직제분리로 기관간
인력의 이체 활용 곤란으로 인력활
용의 효율성 저해
- 각 부처 기관별로 직제가 세분
화되어 있어 한 부처에서 여러
차례 직제를 개정
- 대국회 및 대국민 등 대외적
측면에서 잦은 직제작업으로 사
실보다 인력이나 기구가 더 증
가하는 것으로 인식이 확산

〈개선방향〉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단계별로 통합하여 총정
원제로 운영
- 본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
상호간의 정원관리와 활용에 신
축성과 효율성 확보
- 통합직제로 불요불급한 기관의
직제개정 억제
- 부처별 직제통합으로 직제관리,
개정의 편성과 능률성 확보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계법령
5. 하위직 통합 정원제 실시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직의 직급별정원제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의 승진적체현상 심화 ○ 장기근속 하위직공무원의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급을 총정원으로 통합하여 기관별 업무실정에 맞게 운영도록 융통성 부여 ○ 기관별 실정에 맞는 인사운영유도 ○ 하위직의 승진적체 해소로 사기 진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개별직제
6. 정부조직 관계법령정비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개별직제 ○ 정부조직 관계법령의 불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과 기관명칭의 불일치 • 부처간 중복, 이중감독 및 사각기능 • 기획관리실 조정기능 취약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점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명 변경 및 기능조정 • 정부조직 및 관련법령의 개정조치 • 직제통칙 및 관련직제개정으로 기획관리실의 조정 통제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 법 및 각 기관 직제

과학기술처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계법령
1.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설립절차 간소화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처장관이 설립인가신청서를 검토,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판단후 •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가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인가절차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효율적 결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나 • 현실적으로는 인가신청서에 대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결과 초래 (15 ~ 20 일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 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 2 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개 선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 의 절차를 삭제하여 처리기간 단 축 ※ 설립 인가 시 관보상 법인 설립 인가 공고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토 록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립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갈음 	
2. 기술용역업 등록제도 개선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용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과학기술처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용역업, 19개 기술부문, 87개 전문분야(등록업체 수 : 451개사) • 기술인력, 자산 및 시설이 등록 기준에 적합할 경우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확보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용역 육성법시 행령 제 3,5 조

※ 등록기준 (산업설비용역업)

- 기술인력 : 기술사 10인, 건축사 1인을 포함 고급기술자 30인 이상과 기술자 90인 이상
- 자본금 : 10억원이상
- 사무실 : 600 m^2 이상
- 기술사보유 의무화등 경직된 기술용역업 등록제 실시로 기술용역업 신규 창업 곤란
- 기술사 수급 불균형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업체 발생

< 개선 방향 >

- 기술용역업의 등록기준 및 전문분야 재조정등 등록제도 개선
 - 등록용역업의 등록기준 및 전문분야 재조정등 등록제도 개선
 - 87개 전문분야를 중분류 (기술부문) 하여 관련분야 기술사 활용 강구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판계법령
3. 기술사 종목의 재분류 및 통·폐합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기술사 자격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개 기술분야, 104개 종목 ○ 104개 종목중 93개 종목의 기술 사 검정 주관부처 : 과학기술처 ○ 기술사 종목이 과다하여 검정시행, 보수교육등에 어려움 초래 ○ 종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인접 부문 기술분야간의 상호활용에 제 약이 따르고 업무영역이 유사한 종 목간에 잦은 충돌 야기 ○ 일부 종목의 기술사는 응시자 및 합격자 수가 미미해 기술사 종목 설정의 의미 희박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술분야에 속한 기술사 종목 의 축소 ○ 극소수 배출 기술사 종목은 유사 또는 핵심 기술사 종목으로 통합 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 자격법시 행령

- 산업기술 기여도가 극히 낮고, 응시자 또는 합격자가 적거나, 나년간 무응시 종목은 폐지

4. 기상예보

업무 개선

〈실태〉

- 일일예보

- 당일을 포함하여 3일간의 기간 중 예상되는 날씨, 기온, 파고등에 관한 예보 실시

○ 기상업무

법 제 12 조

- 산업사회의 다양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보다 장기적인 일일예보의 수요증대에 대처 미흡

○ 동법시행령 제 4조

〈개선방향〉

- 5일간의 일일예보제 실시

환경처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련법령
1.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제도 개선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시·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비상설)를 두고 있으나 조정실적 없음. ○ 현행 환경보전법상 피해구제제도는 단순한 조정에만 국한되어 있어 분쟁의 조기해결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전문지식 등이 적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결여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어 분쟁조정을 독립적으로 전담 켜 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관을 두어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피해구제제도 확립 	<p>○ 환경보전법 제53조 내지 제60조</p> <p>○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법 제정(국회 계류 중)</p>

- 종전의 단일 조정제도를 알선, 조정, 재정의 3 단계로 구분하여 분쟁을 조기해결토록 개선

2. 대기분야

일부 배출
시설의
범위 축소
조정

<실태>

- 가스, 입자상물질 및 악취배출시설 중 일부 배출시설의 규정이 광범위하여 배출시설 해당 여부 불명확
- 1일 원료사용량 0.3톤 이상의 석유화학제품의 제조·가공시설중 폴리에칠렌 수지 또는 폴리프로필렌 수지 등 의 제품을 단순가공하기 위해 압축성형하는 경우 P.V.C의 경우와는 달리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거의 없거나 극히 미약하여 방지시설 면제 승인대상이 됨.
- 오염물질이 거의 없거나 극히 미약하여 방지시설 면제대상이 되는 시설이 배출시설로 되어 있어 기술감리를 통해 해당 배출업소에서 배출시설 사안별로 면제승인을 받음으로써 인력, 시간 등 업소의 부담을 가중

- 환경보전
법시행규
칙제 3조
(별표2)
- 대기환경
보전법
제정(국
회 계류중)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3. 자동차소음 최초 검사 제도 개선</p>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제조시설이 아닌 단순가공 시설 중 오염물질 발생이 극히 미미하거나 이미 방지시설 설치면제승인이 난 시설과 같은 규모나 종류의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도록 함.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자동차 소음최초검사는 자동차 제작시에 매차종마다 받게 되어 있음. ○ 기본차종에서 변경된 동일차종이라도 소음최초검사 생략신청에 의해 생략승인 여부를 검토·통보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최초검사 생략신청 건수의 급증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작성 및 검토로 민원인(자동차회사) 불편 초래 및 행정능률 저하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자동차 소음최초검사 생략승인 신청을 소음최초검사 생략신고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신고 검토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행위를 종결 ○ 자율생략신고를 인정하되, 후속조치로 수시검사 강화 	<p>○ 환경보전 법 제 32 조의 4</p> <p>○ 자동차소 음검사규 정(환경 청고시 제 86-11 호)</p>

국가 보훈처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 계 법령
1. 유족부모 노령 부가 연금 지급 연령 인하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부모 노령 부가연금 지급대상 <p>90. 6 월까지는 75세 이상</p> <p>90. 7 월부터 70세 이상</p> <p>— 상이군경 및 미망인 노령부가 연금 지급연령 (60세) 과 유족 지급연령 (70세) 대상자간 시혜 형평 문제 대두</p>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부모 노령부가 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지급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 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 계 법령
2. 주택지원 대상범위 확대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하고 있는 부모 또는 장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연금 수급권이 있는 다른 대상자는 5년이상 무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지원 - 별거하고 있는 부모와 장남이 각각 대부 대상자 (예 : 부모 - 군경유족, 장남 - 상이군경)인 경우에도 주택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무주택으로 제한함은 불합리 <p>〈개선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하고 있는 부모와 장남이 각각 대부대상자인 경우 2년이상 무주택인자는 주택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주요업무 계획 시행 지침

3. 임대아파트

<실태>

지원대상

- 임차대부 기지원자에게 단독주택

주요업무계획

범위확대

- (구입, 신축) 및 분양아파트는

시행지침

지원이 가능하나 임대아파트는

지원이 불가

- 임차대부자는 생활이 곤란하여

단독주택구입 및 아파트분양을

위한 자기부담금 마련이 지극히

곤란

<개선방향>

- 임차대부 기지원자에게 임대아파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외 무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1.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장에게 국외주재소속 임·직원의 직무 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 위촉(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 89년 12월 한국외환은행 민영화 - 감독권 위촉대상기관의 열거식 규정으로 대상기관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설정 곤란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화 및 자율화 추세에 따라 공사등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은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임·직원의 직무 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공관장에게 위촉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 24 조

내부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계법령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인계절차 개선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익일 12시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관할파출소에 인계 - 월 8회 관할파출소에 신청서 인계로 행정상 업무 복잡(매주 2회 <수, 금요일> 신규발급) - 담당공무원의 이석으로 타민원인의 불편 야기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월 1회 (익월 5일까지) 관할파출소에 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의3
2. 부동산 중개업 허가절차 개선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분기별로 신청접수후 당해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20일내 허가처리 (중개업 허가제한지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 제3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신청후 장기간 대기함으로 써 무허가업자 발생 및 점포 구입에 따른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로 신청 접수후 당해 달이 끝난 날로부터 7일이내 허가 처리 	
3. 민방위대 편성 제외 절차 및 서류관리 제도 개선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편성 제외대상 학생의 편성 제외 신고서를 소속 학교장이 일괄 취합후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면 동장에게 제출 - 대상학생의 각 주민등록지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초래 및 공공요금 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 18 조 및 업무 지침

< 개선 방향 >

-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지가 학교관
내가 아닌 타지방일 경우 편성
제외신고서를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통보
-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즉시
해당 읍면동에 통보(문서사송편)

4. 민방위 교육

이수 연령
체계 개선

< 실태 >

- 연령별 교육 이수체계
 - 20 ~ 24 세 : 연간 8시간 총 40시간
 - 25 ~ 35 세 : 연간 2시간 총 22시간
(소양교육)
 - 36 ~ 40 세 : 연간 8시간 총 40시간
(기본교육)
 - 41 ~ 50 세 : 교육면제

○ 민방위
기본법
제 21 조

연 4회 비상소집훈련

※ 신편대원 4시간의 특별교육

- 예비군 편성연령 인하에 따라
34.35세 연령층이 민방위대원
으로 편성되므로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 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교육 이수 연령체계 조정 필요 ◦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이수 시간 증가로 부담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 세 대원의 교육시간 조정 연 8시간 → 연 4시간 ◦ 장년층 대원에 대한 교육면제 연령 인하 41세 → 40세 	
5. 건축허가시 소방동의 대상의 범위조정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 대상물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 연면적 $1,000 m^2$ 이상 ◦ 건축허가 동의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 이내 (1회에 한하여 3일 연장 가능) - 건축허가 동의 대상 기준 불합리 (강습소의 경우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법 시행령 제 4 조

- 소방시설 적용시 완벽한 적용
곤란(동의 기간 짧음)

<개선 방향>

- 동의 대상물의 범위 조정
 - 사업장 : 연면적 $1,000 m^2$ 이상
 $\rightarrow 600 m^2$ 이 상
 - 강습소 : 연면적 $1,000 m^2$ 이상
(신규)
- 건축허가 동의 기한 조정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
 - $1,000 m^2$ 미만 : 3 일 이내
 - $10,000 m^2 \sim 20,000 m^2$ 미만 : 5 일 이내
 - $20,000 m^2$ 이상 : 7 일 이내

6. 소방검사

<실태>

- 대형 특수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검사를 일반 소방행정기관에서
실시
(원자력발전소, 정유공장 등)
- 소방법
제 5 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 계 법령
	<p>— 원자력발전소등 특수시설 소방 검사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 검사 소홀로 대형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대책 미흡</p>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기술용역협회, 소방기술사 분회 등 민간전문단체에 위탁검사 실시— 점검지역 : 서울, 부산— 점검대상 : 대형, 특수시설— 위탁기관 : 협회 또는 용역단체 <p>※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제도화</p>	

재 무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법령
1. 국유재산 사용료율 조정	<p style="text-align: center;">〈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당해 재산가액에 사용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재산가액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건물의 경우 과세시 가표준액 적용 가능 - 사용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보존목적 수행 : 100분의 5 이상 • 공무원의 후생목적 수행 : 100분의 8 이상 • 기타 : 100분의 10 이상 ○ 경작목적으로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양자간의 사용료가 상이하여 민원 유발 - 국유재산 : 연평균수확량에 의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26 조 제 3 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 공유재산 : 연간수확량에 의한 소득금액의 100 분의 15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15 중 택일</p> <p>— 소득금액 산정시 공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유재산 : 공과금• 공유재산 : 필요경비 (공과금 + 생산하는데 필요한 경비) <p>○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할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담 과증</p>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작목적의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조정하여 공유재산 사용료와 형평유지○ 사용료 산정시 재산가액 기준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하	

일원화로 시장지가 시장

2. 통화안정

증권 만기

구조의

다양화

<실태>

- '86 이후 국제수지의 흑자전환으로 인한 해외부문의 통화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기조 견지를 위해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

○ 한국은행

통화안정

증권법

통안증권 발행 추이

(단위 : 억원)

년도	'86	'87	'88	'89
총발행	44,354	93,830	169,667	201,486
순증	27,545	49,159	71,990	19,319

- 통안증권의 만기가 대부분 1년 (최장 1년 6개월)인 단기로 되어 있어 매년 차환발행의 부담

<개선방향>

- 통화관리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단기로 되어 있는 통안증권의 만기를 중장기화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안증권만기의 중장기화를 위해 서는 현행 할인방식의 발행으로 는 통화환수의 효과가 적으므로 액면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개정 - 중장기 통안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운영위 원회 규정을 개정 	
3. 환율 산정 방식의 개선	<p>〈 실 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환율제도는 복수통화바스켓 방식에 의한 변동환율제로써 환율 은 국제외환시장에서의 주요통화시 세, 내외금리차, 경상수지, 물가, 고 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 정됨. ○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환율 결정에 있어 가격기능이 제약됨. 	○ 외국환관리 규정

<개선방향>

- 시장평균환율제의 도입으로 환율의 가격기능 제고
 - 외환거래 중개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자금증개설에서 전일의 모든 외국환은행이 외환시장에서 거래한 원·달러 현물환거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시장평균환율 산출
 - 미 달러화 이외의 기타통화에 대한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당해 통화간의 환율을 재정하여 결정함.

국 세 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1. 자납세 금의 구좌이체 납세제도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의 자진신고납부시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은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 발생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가 신고서에 납부의뢰서를 첨부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는 납부의뢰서를 은행에 송부 • 은행은 납세자의 거래구좌에서 국고로 직접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징수법 제 9조
2. 미파세 증명제출 간소화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분양·임대신청접수시 미파세 증명서를 모든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음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력의 낭비 초래 	

〈개선방향〉

-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당첨자에
한하여 미과세증명서를 받도록 함

3.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자료수집
방법 개선

〈실태〉

- 비공개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의
제배당은 주주 사인간의 거래에서 발생
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및 지
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과세자료가 수집이 안되고 있음.
- 법인세신고시 법인이 제출하는 주
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의제배
당소득을 파악하고 이를 과세자료
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지
침이 없음.
- 소득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5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18 조
제 6 호

〈개선방향〉

- 의제배당 자료수집방안을 마련하여
사무처리규정에 반영
-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누락 등 원천적인 자료누락.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법령
	<p>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전산시스 템을 개발하여 과세자료의 누락 방지</p>	
<p>4. 소득세 납 세필 증명 서 폐지</p>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납세자의 급여액, 세액, 납부연월일을 확인받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 받은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도산·폐업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은 경우 등 증명서교부가 불가능하여 이의 교부를 요구하는 민원인과 많은 마찰이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허위로 확인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즉시 교부하여 주게 됨으로써 잘못 교부될 우려가 	<p>○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92 조</p>

있으며 특히, 원천징수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전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에 의존하게 됨.

〈개선방향〉

- 소득세 납세 필증명서 교부제도의 폐지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납세완납 증명원 교부로 갈음함.

5. 세금계산서

〈실태〉

교부 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부가가치세

완화

- 재화·용역의 교부시기에 교부

법 제 16 조

- 교부시기 위반시의 제재

제 1 항

- 교부자: 미교부가산세 (공급가액의

1 %)

- 수취자: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가액

의 10 %)

- 법상 교부시기가 사업자의 거래관

행과 달라 납세자 불편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재화·용역을 공급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로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 도모	
6. 내수면 어업 선박용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근해어업용 선박 및 농업기계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내수면 어업용 선박의 석유류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내수면어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음.○ 내수면어업용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여 내수면어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 감면 규제법 제 74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78 조 제 1 호

7. 세무사찰

제도의
개선

<실 태>

- 탈세조사기구의 다원화로 포탈법처
별의 형평일실
 - 세무판서 : 포탈세액의 일정액이상
의 경우에만 사직당국에 고발, 형사처벌하
고 그 이외에는 통고처분
 - 경찰관서 · 검찰 : 형사처벌
- 세무행정 평의위주의 세무사찰
집행으로 납세자의 민원 및 오해
유발
 - 일반조사와 세무사찰의 구분
불분명
 - 객관적 세무사찰 적용기준의 미비
- 세무사찰의 소극적집행으로 탈세규모
및 수법의 대형 · 지능화에 따른 규
제 미흡

- 조세범처벌
절차법
- 사찰사무
운영규정
- 지방세무
관서직제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찰사무운영규정의 개선 (조세범칙조사 운영규정 제정)- 조세범칙에 대한 공정한 처리기준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 죄질 · 포탈금액 · 조사목적 등에 따라 객관화• 일반조사 진행중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기준 마련- 조세범칙조사절차의 합리성 확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범칙조사 사무관할의 조정• 조세범칙조사 집행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조세범칙조사의 엄정한 통제관리• 임의제시에 의한 영치조사 통제 장치- “세무사찰”이라는 용어의 순화○ 조세범칙 전담기구 설치 및 조세범 조사전문요원 확보	

관 세 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1. 무환관계규정 의 통폐합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승인 면제 물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관규정이 없어 필요시마다 개별적인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 무환관계규정이 복잡, 다기할 뿐 아니라 동일한 무환물품에 대하여 통관규정이 중복되고 있으며, 세관별로 동일한 규정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음. <p>〈개선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수출입 승인 면제 물품의 통관사무처리요령” 제정으로 무환물품의 신속한 통관도모 ○ 현실과 괴리된 무환관계규정의 폐지 및 중복조항 통·폐합 ○ 통관이 곤란한 규정은 분리하여 별개 규정으로 운영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2 . 관세 환급용 소요량증명 징구 제도 개선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면장단위별로 외국환 은행장이 발급하는 소요량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해야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초래 <p>〈개선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에서 작성 · 제출한 소요량개선서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외국환 은행장이 발급하는 소요량증명서에 갈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특례법 (청고시 제 88-534 호)
3 . 사전 (수입 신고전) 평가제도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 기술용역비, 로얄티 등이 수입신고후 (수입면허전) 관세대상 여부가 문제될 경우 평가하는데 장시간 소요되어 수입면허가 지연 될 뿐만 아니라, 동일 사안에 대하여 통관지 세관이 다를 경우 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평가 시행규칙 (청고시 제 89-680 호)

세관마다 동일자료를 반복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하게 되어 민
원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음.

〈개선방향〉

- 수입자 신청에 따라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세무관리과 또
는 수입과)에서 수입신고전에 평가
- 대상
 - 동일한 형태의 반복된 수입거래
 - 특수관계 수입거래, 해외기술용역
(도입)과 관련된 수입거래 등
- 신청자의 거래관계와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평가방법,
가산율, 정산여부 및 정산방법 등
을 결정하여 “사전평가서” 교부
- 수입통관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사전
평가내용에 따라 신고하였는지 여
부만 확인하고 평가는 생략
- 수입통관후 수정신고 또는 과오
납 환급에 의고 의하여 종합정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4. 입항수속 절차의 간소화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무역선(기)의 입항수속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기)장은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고 적하목록, 선(기)용품 목록 등을 제출 - 입항수속담당공무원이 승(기)선 하여 이를 심사·확인 ○ 외국무역선(기)이 개항장(A)에 입항하여 입항수속절차를 필한 다음 적재물품의 하역작업을 종료하고 타세관 관할지 개항장(B)에서 수출 물품 등을 적재하기 위하여 기항하였을 경우 동일한 입항절차를 밟아야 됨으로써 입항절차에 따른 시간낭비로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에 지장 초래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무역선(기)이 우리나라 개항에서 입항절차를 필하고 하역 또는 적재작업을 종료한 다음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 45 조

내의 다른 개항장으로 기항할 경우, 밀수 등 특별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항지 관할 세관장의 판단결정으로 입항보고서, 적하목록 등을 제출받는 간이절차에 의하여 입항보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입출항담당공무원이 승(기)선하여 입항수속하는 절차는 생략

법 무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1. 치료감호소 외래진료제 도입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피치료감호자의 수용, 치료를 위하여 치료감호소 설치 ○ 피치료 감호자의 수용, 치료중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을 경우 치료감호종료 결정으로 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한 자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없음. ○ 정신질환은 통상 입원치료후 일정 기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퇴소후 완전 방치하고 있음.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감호소 외래진료제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진료 및 투약으로 계속 치료하는 방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호법 제9조,

- 외래진료제 도입 실시에 필요한
관계법규·인력 및 예산문제 검토

2.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규칙

개정(안)

〈실태〉

-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규칙은
경비 교도대의 조직 및 운영과
인사, 복무, 보급, 보건, 원호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법무부훈령
제 13 호)
- 관련법령인 병역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
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정시설 경
비교도대 운영규칙의 규정정비, 운영
상의 문제점 개선 필요

○ 교정시설

경비교도

대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

○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유공

자예우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선방향〉

-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동규칙
관계조문 개정·정비보완
- 기타 경비교도대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보완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3. 한국계 지 정미수교국 가 국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권한 위임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미수교국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 장관 승인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과다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미수교국가 국민이 체류기간 연장허가시 장관의 승인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재량으로 처리○ 위임범위<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국일로부터 90일 범위내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단, 사무소장이 판단하기 어렵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승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처리즉시 장관에게 보고	<p>○ 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 제 73조 3호</p>

국방부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계법령
1. 해군기지 구역내 건축규제 완화	<p>〈실태〉</p> <p>○ 해군기지구역내에서 가옥 기타 건축물의 신축, 증축행위에 관한 허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관청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사전 협의 - 건축허가 등을 할 때마다 사전 협의 경유에 따른 행정지연으로 민원야기 <p>〈개선방향〉</p> <p>○ 해군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시에 반 사전 협의</p>	○ 해군기지법
2. 군용시설 용지 취득 절차 개선	<p>〈실태〉</p> <p>○ 군용시설용지 취득을 위한 토지소유자와의 매매계약 등에 관한 협의 불 성립시 토지수용절차 적용</p>	“국방군사사업용지취득에 따른 특례법” 제정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수용절차를 경유할 경우 수용재결시까지 평균 1년이상 소요- 주민들의 군사시설 설치 기피 및 사업계획 기간내의 토지취득 곤란에 따른 사업집행 차질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군사사업용지취득에 따른 특례법” 제정•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방부장관이 사전에 토지취득 장애요인을 평가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결정 고시• 토지소유자의 매도 불응시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병무청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계법령
1. 재학생 입영 연기제도 개선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이상 재학생의 징병검사 및 입영 연기제도 · 징병검사 : 졸업전해 징병검사 실시 · 입영 : 익년 3월이후 입영 * 학적변동자, 입영원 출원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중 징병검사 실시후 즉시 의무부과 - 재학생에 대한 징병검사 미수검으로 유사시 병역자원의 조기 활용 곤란 - 재학중 병역사항 미확정으로 진로결정등 애로 - 진학자와 미진학자간의 병역 자원 관리 이원화로 업무복잡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병검사 : 재학생 전원 19세되는 해에 실시 ○ 입영 :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 동법시행령

문 교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1.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의 법인화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은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시설로서, 교육법에 의한 의학·치의학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국민일반에 대한 진료 업무를 수행함. ○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은 예산회계 운영상으로는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에 의거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리되며, 조직·인사관리등은 국립대학교에 포함되어 운영됨. ○ 일반행정체계에 의한 조직·인사운영에 따른 인사 및 예산운영의 경직성으로 교육연구와 대규모 사업체로서의 진료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병원의 특수성 발휘에 미흡하여 효율적 병원 운영을 저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법 및 동시행령 ○ 국립학교 설치령 ○ 국립대학 교부속병원 특별회계법 및 동시행령

〈개선방향〉

- 국립대학교부속병원의 법인화 - 국립
대학교병원 설치법 제정
 - 이사회 설치 : 이사 7인 및 감사 1인
 - 재정
 - 대학병원에 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음.
 - 국가는 대학병원에 기금출연 및 보조를 할 수 있음.
 -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대학병원은 문교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함.

2. 종합대·단

과대 구분
폐지

〈실태〉

- 현 제도상 대학을 종합대학교 및 단과대학으로 구분
- 종합대 및 단과대의 구분에 따라 종합대학교의 장은 총장으로 단과 대학의 장은 학장으로 명칭을 구분 사용

○ 교육법

제 109 조,
제 112 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 대학현황 ('90 학년도)</p> <p>- 종합대 : 65 교, 단과대 : 42 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장·학장 명칭 구분에 따라 사회적 예우상 차등대우○ 정부의 각종 행·재정지원 시책에 있어 종합대를 우선하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 유발○ 교수·학생·학부모의 종합대 선호 의식 조장○ 종합대 선호의식에 따라 무리하게 종합대학 개편을 추진하여 재정 압박 등 학교운영에 애로<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리한 학과 신·증설 요구 등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법을 개정하여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의 형식적인 구분을 폐지• 교육법상 대학 또는 대학교 명칭을 대학으로 통일	

- 학교명칭은 대학자율 결정(대학
교 또는 대학으로)
- 총장 및 학장의 명칭을 총장
으로 통일

3. 공공도서관

업무관리기

능 일원화

< 실 태 >

○ 도서관법

○ 공공도서관 현황(총 195 개관)

• 문교부소관 : 147 개관(75.4%)

• 내무부소관 : 34 개관(17.4%)

※ 사립 : 14 개관(7.2%)

○ 공공도서관은 지도·감독체계가
문교부, 내무부로 이원화되어 있음.

• 공립공공도서관 관리기능의 이원
화로 도서관정책·행정수행의 일
관성 결여

※ 1 판당 상호비교(평균)

구분	장서	직원		예산(천원)		
		일반	사서	도서구입	기타	계
문교부 소관	28,726	10	5	8,977	151,972	160,949
내무부 소관	19,131	5.5	1.6	6,210	89,163	95,373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육부서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은 자료, 전문인력의 빈약 및 운영의 침체등으로 인해 적극적 도서관 봉사 체제 결여 • 도서관 상호협력체제 운영상의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상호간의 자료 상호 대차가 어려움. - 각종 도서관의 문현정보 공동 구축 및 교환이 어려움. - 전국 도서관 협력망 구축이 잘 안됨.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관리업무의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관장(내무부소속)의 공공도서관을 지방교육자치 단체(문교부소속)로 관리전환 ○ 공공도서관운영비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현실화 	

- 관리전환시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도서관법 제22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부담-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정보문화 기관이기 때문임.
- 공공도서관 봉사의 전문화 및 일원화
 - 학술 및 학습정보 제공
 - 산업 및 경제정보 제공
 - 문화공간 활용

문화부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계법령
1. 공연장설치 허가요건 강화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설치허가(공연법 제7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의 예외(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석이 300석 이하이거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공연장 - 객석이 300석 이하이거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공연장이라고 하더라도 대극장과 동일하게 영화관을 경영하고 있어 공연장 난립과 대중이용시설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비디오 소극장을 비롯한 영상매체를 이용한 소극장의 증가로 인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법

저질 영상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실
정임.

<개선방향>

- 소규모 공연장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실시하여 지도·감독 및 계도업무
강화
- 공연법 개정 ('90 상반기 예정)

체 육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1.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법인화 추진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성격 : 대한체육회 시·도지부로서 민법 제50조의 법인분사무소 ○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경기단체의 시·도지부로서 구성 • 시·도체육회 산하에 시·군체육회 를 둠 • 대의원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운영은 대한체육회 정관규정을 준용 ○ 대한체육회의 지부로서 보다는 지방 자치단체 산하단체의 성격으로 활동 ○ 그동안 사실상 독자적인 사업없이 대한체육회가 승인·주관 및 주 최하는 사업에만 참여 <p>〈개선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체육회 시·도지부관계자, 체육 부 합동 실무추진반 구성하여 각계 의견 충분히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 진흥법 제23조

- '90년 하반기중 법인화 완료 목표
 - 지방자치제 실시와 병행하여 추진

2. 사회체육

지도자양성

제도개선

<실태>

- 양성기관 : 5개대학 사회체육지도자

연수원(서울대, 충남대,
조선대, 동아대, 대한체육
과학대)

- 양성방법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24조의 자격요건을 갖
춘 자로서 소정의 연수
과정수료 및 검정합격자

- 급별 양성

- 1.2급 : 120시간이상 연수과정수료
및 검정합격자
- 3급 : 50시간이상의 연수과정
수료자

- 일반대학연수원 지정 양성으로

- 국술도 등 무술종목 및 신규
개발종목 전문심사 미흡
- 일반체육단체의 자체 지도자 양성
과정과 중복

○ 체육지도
자연수 및
자격검정
에 관한규
칙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 계 법 령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체육지도자연수원의 지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수준의 연수시설·강사진 보유 체육단체 ○ 체육단체의 자체양성지도자에 대한 자격부여 	
3. 골프장 규모 별 면적상 한선 규정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의 종류(회원제, 일반, 간이)별로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음. ○ 골프장이 증설되면서 경쟁적으로 면적이 확대되고 있어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저해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골프장 건설면적이 점점 확대되어 불필요한 토지가 골프장 면적에 포함되어 국토이용의 효율화 저해
- 국민들에게 골프장이 토지투기에 앞장서고 있는 듯한 오해 야기
- 투자비 증대로 회원권 분양가격 상승 및 이용료 고액화

〈개선방향〉

- 골프장의 종류 및 규모별로 최대상한선 규정

4. 체육도장의 〈실태〉

- | | | |
|---------|--|----------------------|
| 운동종목 확대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체육도장의 운동종목 은 태권도등 17개종목만 규정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체육도장 종목의 일부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되어 많은 민원을 야기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체육도장의 운동 종목을 확대	
5. 지방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현행 조례의 규정내용이 주로 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일반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의 규정내용이 체육시설을 소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낮은 실정임.	

〈개선방향〉

- 현행 조례에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 활용 측면을 보완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준칙(안)을 작성·시달하여 조례 제정 및 개정시 반영 토록 함.

농림수산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법령
1. 부 실 관 리	<p><실태></p> <p>초지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는 사료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부자금지원 등에 의거 조성하고 있으며, 초지조성자는 성실판리가 의무화되어 있고, 초지법의 규정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초지조성에 지장을 주는 형질 변경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 초지는 지난 67년이후 128천헥타를 조성하였으나 경제적인 여건변화등으로 축산업경영의 실패등으로 초지를 매각 또는 관리를 포기하여 방치하는 등 부실판리 초지발생 증가 ○ 허가없이 초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형질변경하는 위법사례 발생 ○ 축산업 경영실패 또는 매각된 초지는 관리소홀 또는 성실판리의 무를 이행치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 저하 	<p>○ 초지법</p> <p>○ 초지법 시행령</p>

〈개선방향〉

- 부실판리초지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타용도의 전용을 현실화하고, 부실판리 초지는 초지조성 지구고시를 해제하여 토지관리에서 제외
- 초지전용 여건을 개선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성 제고
-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초지관계법령의 개정

2. 생사류정중량

〈실태〉

- 산정방식개정
 - 생사류 정중량 산정방식
 - * 정중량 = 무수중량 + (무수중량 × 11 %) 또는 원중량 × { (1 - 검사단위 수분율) × 1.11 }
 - SSC (국제생사표준위원회) 표준방식 : 중국, 스위스 및 국내 타섬유 업계 (견방, 면방등)에서 채택하고 있음 .

○ 생사류
검사규칙
제 13 조
제 3 호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중량 산정방식이 각국별로 상이하여 생사류 수출입시 불편 초래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사류검사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3 조 3 호 • 제 24 조 2 항 3 호 * SSC 표준방식 채택 $\text{정중량} = \text{원중량} \times \frac{(1+11\%)}{(1+\text{측정수분율})}$ 	
3. 생사류검사 수수료면제	<p style="text-align: center;">〈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업법 제 13 조제 3 항에 의거 생사류검사 1 건당 항목별로 20 원에서 최고 3,870 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음. ○ 민원인(검사신청인)의 경비부담으로 수검기피 ○ 미검품 생사류 유통으로 생사류 및 견적물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여 국제경쟁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업법 ○ 생사류 검사규칙 ○ 농림수산부 고시

- 유관기관(식물검역소, 농산물검사소)의 검사수수료 면제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남.

<개선방향>

- 생사류 검사수수료 면제
 - 임업법 제13조3항 삭제
 - 생사류검사규칙 제6조 삭제

4. 누에고치등급

명칭 변경

<실태>

- 현행 누에고치의 등급명칭은 2수등, 수등, 1등, 2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 “2수등”, “수등”은 일반적 통념인 “숫자” 명칭에 부합되지 않아 호칭과 이해등에 번거롭고, 다른 농산물검사등급 명칭과도 체계상 일관성이 없음.

○ 농산물
검사규격
규칙
(농림수
산부령
제933호)

○ 농림수산
부고시
제87-
20호)

<개선방향>

- 등급명칭을 타농산물 등급규격체계와 부합되게 개정
 - 등급구분 : “1등”, “2등”, “3등”, “4등”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법령
5. 축산물공판장 개설지역규제 완화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공판장은 시지역에서만 개설운용 가능 ○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환경, 공해문제 및 관련법규의 과다한 규제로 시지역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유통편익을 위하여 시지역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군지역에도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2 조 조의 2
6. 농약판매업 이전절차 간소화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판매업소의 농약관리인 변경시 시설변경 및 등록증 재교부등에 관한 규정 미비 ○ 양도 및 이전의 경우, 폐업신고후 신규로 등록을 해야되며, 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관리법 제 10 조

오손 및 훼손시 재교부규정 부재
로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향>

- 농약판매업의 양도, 관리인변경, 시설변경, 등록증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 이전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 해소

농촌진흥청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계법령																
1. 생물학적제제 동물약품검정 제도 개선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약품 생물학적제제와 항생물질제제의 검사는 제품생산전 제조회사의 자체검정과 국가검정기관의 검정등 이중검정을 받고 있음. <p>※ 생물학적 제제 검정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th>'65</th><th>'75</th><th>'88</th></tr> </thead> <tbody> <tr> <td>연구원</td><td>4</td><td>3</td><td>3</td></tr> <tr> <td>품목수</td><td>6</td><td>15</td><td>65</td></tr> <tr> <td>검정건수</td><td>36</td><td>248</td><td>838</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제품의 검정에 따른 전문성 결여 및 이중검정으로 인한 검정 인력, 비용 낭비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검정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을 선정, 동 품목에 대한 국가검정을 면제하여 제조업소의 품질관리능력 제고 	구분	'65	'75	'88	연구원	4	3	3	품목수	6	15	65	검정건수	36	248	8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검정 동물약품 검정규칙
구분	'65	'75	'88															
연구원	4	3	3															
품목수	6	15	65															
검정건수	36	248	838															

산 림 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1.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입목벌채제도 개선</p>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림계획 작성대상 제외 임지는 피해를 주는 입목벌채허가가 가능하나 영림계획 작성대상 임지의 경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입목은 가지만 치고 치수만 벌채도록 되어 있음. ○ 영림계획 작성대상 임지중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입목벌채 필요시 영림계획상 당해년도 벌채계획이 없으면 대, 중, 경목을 벌채할 수 없음.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입목벌채에 대해서는 영림계획 작성대상 임지중 당해년도 계획이 없어도 현지 조사하여 필요시 교부후 영림계획을 수정토록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림영림운영강 (산림청예규)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2. 리기다소나무 수종갱 신 벌기령 하향 조정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기다소나무 ('62년 ~ '78년) 조림 : 49,773 천ha, 149,319 천본○ 대부분 교통이 편리하고 비옥한 임지에 조림○ 수종갱신의 경우 산업비림 벌기령 (25~49) 적용, 벌채률 50% 대상 벌채○ 리기다소나무 일반림의 벌기령은 40~50년○ 리기다소나무 조림의 경우, 이용기 에 달한 임산물의 수요처 부족으 로 판로가 없을뿐 아니라 저소득 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 조기 수종갱신으로 경제수 조림을 원하고 있으나, 벌기령제한으로 불 가능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기다소나무의 현행 벌기령 4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림 영림계획 운영요강 제 8조 (산림청 예규 제 314)

(산업비림 : 25 ~ 40) 년을 하향하여
산업비림 벌기령과 동일하게 임지
여건에 따라 조정

3. 농지담보기관 <실태>

지정

- 농지담보법에 의거 농협, 수협, 축협은 농지담보기관으로 되어 있어 농지를 담보로 하여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음.
- 산림조합은 농지담보 불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산림개발 자금융자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 농지담보법 제 3 조

<개선방향>

-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도 농지담보기관으로 지정

4. 보안림내시 <실태>

업허가 절차

개선

- 보안림안에서의 사업은 주로 입목·죽의벌채, 임산물의 줄취, 채취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사업허가신청시 “실측도”를 첨부하고 있음.

○ 산림법 시행규칙 제 48 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림내의 시업구역 실측을 위한 경비부담 과중 등으로 인한 산주의 불편 초래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방향〉</p> ○ 보안림내에서 시업허가신청시 실측도 대신 구역도 첨부 <p>5. 독립가에 대한 조림비 예치제도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자원화 계획에 의하면 입목벌채 허가지에 한하여 의무조림비용을 예치토록 하였고, 기한내 의무조림불이행시 산림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업정지 및 독립가 운용요강 제10조 규정에 따라 “독립가 자격해제”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음. ○ 독립가는 조림 및 육림등을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의무조림비를 예치토록 하고 있어 행정의 번잡과 경영 의욕저하를 초래 	

<개선방향>

- 독립가는 산림을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건전하고 자율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토록 조림비 예치를 면제토록 함.

수 산 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1. 노후어선 대 체 건조 시 증 톤 건조 허용	<p>< 실 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어선 건조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복량 기준초과 및 정한수초과 어업 : 대형 선망 등 4 종 - 정부 지원 배제 및 피대체 어선 톤수 이내 자가 건조 등 허용 • 선복량 기준초과와 정한수 유지 및 미달 어업 : 권현 망 등 8 종 - 피대체 톤수 이내 건조 허용, 신규 건조 불가 • 선복량 기준 미달 및 선복량 미산정 어업 : 형 망 등 4 종 - 피대체 톤수 이내 건조, 신규 건조는 어업 허가 가능 여부에 의거 허용 • 연안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톤 미만은 5 톤 까지 - 5 ~ 8 톤 미만은 8 톤 까지 - 신규 건조는 어업 허가 가능 여부에 의거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법 제 4 조 및 제 6 조

- 기존어선 톤급규모이상 증톤건조 제한
 - 경제성, 안전성 및 선원거주환경 개선등을 고려한 적정トン급 규모 설정 필요
- 주변국과의 조업경쟁력을 감안한 적정トン급규모의 어선대체 제한

<개선방향>

- 어업별 어선의 선복량기준등에 관한 고시(수산청고시 제87-7호, '87.7.14)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 실시
 - 용역주관 : 한국수산회
 - 용역기관 : 부산수산대학
해양과학연구소
 - 용역기간 : 1989.9.4 ~ 12.31
 - 용역사항
 - 연근해자원의 평가
 - 자원수준에 맞는 어선세력의 판단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별 적정어선규모의 설정 - 어선세력의 감척대책에 대한 이론구성 ○ 용역결과에 따라 현행 선복량기준등에 관한 고시를 개선·보완함. 	
2. 어선검사제도 완화	<p>〈 실 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거 전동력 어선과 5톤이상 무동력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추진기 설치어선은 동력어선으로 간주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기관(엔진)을 거치한 어선은 모두 동력어선으로 간주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어민 불편 및 부담이 증가되어 미수검 어선 발생요인이 되고 있음. <p>〈 개선방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 근거리 조업 및 댐, 호수내에 	○ 어선법 제 16 조 및 동시 행규칙 제 2 조, 제 3 조

서의 운항으로 해난사고 우려가 적은 1톤미만 동력어선과 내수면어선에 대하여는 어선검사 완화
- 최초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고, 그 이후 정기검사 생략

* 입법예고 : '89.12.28 ~ '90.1.19

3. 공동어업권 관리제도 개선

<실태>

- 공동어업권 면허 현황 ('88 말)

○ 수산업법 제 13 조

	계	어촌계	수 협
제 1 종 공동어업	1,755	1,714	41
제 3 종 공동어업	1,965	849	216

- 어촌계에 우선하여 면허하여 지선어민들의 소득원으로 개발
- 제 1 종 내지 제 3 종 공동어업권을 어촌계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어업 특성상 공동관리가 어려운 업종은 소수인이 운영·관리하고 있음.
- 공동어장 생산물은 종류가 많으나 소량으로 위판이 어려움으로 비계통 판매됨.
- 어촌계 발전이 제도적 바탕보다도 어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총계장 개인의 성실성 및 능력에 좌우되고 있음.</p>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업법을 개정하여<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계 소유어업권 중 어장관리 등 운영이 잘되는 어업권은 어촌계에 계속 면허하되, 부실판리 등으로 어업권이 취소된 어업권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는 수협에 면허하도록 함. (법 제 13조)• 2종, 3종 어업권은 소형 정치망 및 어선어업으로 면허 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함.* '90.7.1부터 시행목표로 수산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90.2월 임시국회 심의예정)	

4. 바다유료낚시 터 지정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어낚시행위는 원칙적으로 개방 ○ 낚시인구(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출조: 약 10만명 • 수시출조: 약 300만명 ○ 출조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약 70%): 주로 서울등 내륙지 거주자 • 바다(약 30%): 부산등 해안 거주자 ○ 바다 낚시인구 및 레저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제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조정이 결여 • 낚시인구 증가에 따라 어업자와 분쟁소지 증가 <p>〈개선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에 유료낚시터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제 55 조
-------------------	---	---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가 보유한 공동어장에 시장·군수로부터 유료낚시터를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 55 조) ○ 유어를 수산업과 접목시켜 어민소득 원으로 개발 * '90.7.1 시행을 목표로 수산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90.2월 임시 국회 심의예정) 	
5. 양식장형망선 정한수의 합 리적 조정	<실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 관리 및 양식물(피조개 등) 채포를 위해 양식장형망선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형망선의 정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 70 ha 당 1 척 (경남 122 척, 전남 76 척) - 어선규모: 10 t 이하 ○ 피조개 대일수출시기인 3~4 월에는 각 어장에서 동시 채취작업으로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 20 조

한 양식장형 망선의 부족 및 불법
형 망선 발생

<개선방향>

○ 양식장형망선 정한수의 합리적

조정

상 공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1. 갑류무역대 리업 등록 제도 개선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류무역대리업 등록제도는 1966년 이래 우리 실정에 맞는 독특한 제도로 정착,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업의 무질서한 국내 판매 활동 규제로 수입질서 확립과 수입마켓팅 전문업체로서의 특유한 영역 구축 • 업계의 양성화·조직화를 통한 수입관리 효율화와 건전하고 유리한 수입 및 소비자보호체제 구축 ○ 수입규제제도로 오인됨에 따른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음. ○ 등록업자 기득권 보호에 의한 경쟁제한 및 구매력 약화 초래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무역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경쟁제한 요소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19 조, 제 23 조

- 등록기준의 완화
 - 2개국 이상 외국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1개국 이상은 아시아지역 이외의 국가)
 - 외국의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실적유지요건의 완화
 - 최근 2년중 어느 연간의 수수료 입금실적 : 미화 5만불 이상 → 미화 3만불 이상

2. 중고품수입

제도 개선

〈실태〉

○ 중고산업설비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되, 산업정책상 필요한 일부 품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입 허용

- 해외건설업체의 유휴장비 및 선박 : 주무부처 장의 수입 필요성 및 실수요자 확인후 상공부 승인
- 일반산업설비 : 중고품수입심의위원회의 심의후 상공부 승인

○ 수출입별
도공고
(상공부
고시)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3. 중소기업 구조조정기 금 신용보 증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수입허용 대상품목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설비투자 촉진이 필요할 경우 징초래 ○ 중고품 수입절차의 복잡으로 기업의 불편 야기 <개선방향> ○ 중고수입허용 대상품목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자본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 허용 • 산업합리화 업종등은 수입제한 완화 ○ 중고품 수입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품수입심의위원회 폐지 • 관련 업무의 위임 확대 등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정보화, 사업전환등 구조 고도화를 지원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p>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원제도는 사업전망은 밝으나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지원 수혜 곤란 ○ 또한, 신용보증서 발급시 제3자 연대입보 및 복잡한 심사절차로 적기 자금조달 불가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동 자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 대폭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 심사기준의 마련 • 제3자 연대입보의 면제 • 보증금액 사정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천분 전액 보증 • 영업점장 전결한도 확대 등 <p>4. 고철 유통</p> <p>구조 개선</p>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은 철강재의 주원자재 (원자재 ○ 부가가치 	<p>용보증특례 기준 (가칭)"마련</p>
--	--	-----------------------------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비중 56 %)로서 고철가격은 철강 재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고철 발생량은 급증하고 있 으나 가격은 유통구조의 복잡등으 로 인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실정임. • 고철가격 국제비교 ('8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148 불 / 톤 — 일본 : 123 불 / 톤 — 미국 : 113 불 / 톤 • 국내 고철가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수집단계 : 58 — 유통마진 : 42 — 최종수요자가격 : 100 ○ 고철의 가공시설 낙후 및 야적장 부족 	세법 등

- 고철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가공처리시설의 낙후등으로 철강공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개선방향>

- 유통업체의 대형화, 유통구조의 단순화 추진 및 고철유통의 양성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고철의 유통 마진 절감 도모
- 고철가공설비의 현대화 및 야적장 증설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철강재의 품질고급화 도모

5. 염관련제도

<실태>

개선

- 염전개발과 염의 수급조절에 관한 법령중 과도한 규제사항 및 비현 실적인 제도 잔존
- 민간의 자율성 저해로 생산관계자에 대한 불편 초래

○ 염업조합

법 제13조,

제 30 조

○ 염관리법

제 8 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법령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규제사항의 폐지등 관련 제도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업조합 감사 승인제 폐지 • 염판매수탁규정 승인제 폐지 • 공업용 염 생산보조금 및 손실보상금 교부제 폐지 등 	
<p>6. 수출자유지역 역출입제도 개선</p>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유지역은 전체가 보세구역으로서 인원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 • 인원출입증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 입주 및 지원기업체 직원등 상시출입자 — 2종 : 수시출입자 • 차량통행증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종 : 입주 및 지원기업체 차 	<p>○ 수출자유 지역경비 및 출입 규정 (상공부 고시)</p>

량등 상시출입차량

— 을종 : 수시통행차량

- 입주기업체의 견습사원 및 역내시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이 출입시마다 출입증을 수시 발급하는 등 불편 초래
- 운전원 교체시마다 차량통행증 재발급 신청에 따른 불편 초래 및 구비서류 번잡

<개선방향>

- 보세구역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출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출입제도 개선
- 인원출입증
- 상시출입자가 아닌 일정기간 출입자에 대하여도 별도 출입증 발급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통행증<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전원 교체에 구애되지 않고 차량통행증을 사용하도록 개선— 통행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감축	

공업진흥청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계법령
1. KS 표시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 개선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표시허가공장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판품 조사 및 공장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KS 표시허가업체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후관리 수요의 확대에 비하여 정부의 제한된 인력 및 예산으로써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없음.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KS 표시제품 사후관리에 추가하여 정부가 품질유지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해당 KS 제품)을 공시하여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제조공장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 정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KS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표준 화법시행 규칙운용 요강 (공업진흥청 고시)

특 허 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판례 법령
1. 상표등록 출원의 공개제도 개선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출원공고되지 아니한 상표등록 출원은 그 내용의 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출원중인 상표내용의 비밀유지로 인하여 상표의 이중개발, 중복출원을 유발함으로써 심사적체 초래→민원인의 권리 신속화 저해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중인 상표의 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허용하여 일반인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신속한 권리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제 38 조 ○ 상표법 제 7 조

동력자원부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계법령						
1. 석탄광개발 기준 강화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광에 대한 채광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 • 석탄산업장기계획상의 다음에 명시한 경제적 개발가치기준 이상인 채광계획서에 한하여 채광계획의 인가 <p>다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품위(열량)</td> <td style="padding: 5px;">3,000 kcal/kg 이상</td> </tr> <tr> <td style="padding: 5px;">광채규모</td> <td style="padding: 5px;">맥폭 50 cm, 연장 100 m 이상</td> </tr> <tr> <td style="padding: 5px;">가채매장량</td> <td style="padding: 5px;">18 만톤 이상</td> </tr> </table>	품위(열량)	3,000 kcal/kg 이상	광채규모	맥폭 50 cm, 연장 100 m 이상	가채매장량	18 만톤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산업법 광업법 시행령
품위(열량)	3,000 kcal/kg 이상							
광채규모	맥폭 50 cm, 연장 100 m 이상							
가채매장량	18 만톤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탄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개발가치기준이 미흡하여 산발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비경제 영세탄광 계속 발생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개발가치기준 상향 조정 <table border="1"> <tr> <td>품위 (열량)</td><td>4,000kcal / kg 이상</td></tr> <tr> <td>광채 규모</td><td>맥폭 50 cm, 연장 100 m 이상</td></tr> <tr> <td>가채 매장량</td><td>18 만톤 이상</td></tr> </table>	품위 (열량)	4,000kcal / kg 이상	광채 규모	맥폭 50 cm, 연장 100 m 이상	가채 매장량	18 만톤 이상	
품위 (열량)	4,000kcal / kg 이상							
광채 규모	맥폭 50 cm, 연장 100 m 이상							
가채 매장량	18 만톤 이상							
	<p>※ 신규개발탄광의 채광계획 인가 등 을 억제 하므로서 영세비경제탄광 의 신규 출현을 미연에 방지하 고 석탄산업 합리화사업의 효율 적 추진 및 적정생산체제 유지</p>							
2. 연탄품질관리	〈실 태〉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탄의 품질관리 우수업체와 일반업체 구분없이 1년동안 30회 품질검사 실시 ○ 연탄품질관리 우수업체를 일반업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서 품질관리 유도대책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산업법 ○ 시행 규칙 						

〈개선방향〉

- 우수업체로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
발열량 검사는 1년동안 매월 1회, 규격검사는 격월로 6회 실시
 - 우수연탄공장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판 게시
- 일반업체는 1년동안 종전과 같이 30회 실시

3. 해외자원

개발사업

허가절차

개선

〈실태〉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개발계획을 신고한 다음 조사사업 허가와 개발사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 해외자원
개발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 미추교국에 대한 진출시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

- 불필요한 규제가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 곤란

〈개선방향〉

- 경제의 개방화, 민주화 시책에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부응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대북방 개방화정책에 따라 미수교국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진출절차를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자원개발계획 신고제와 조사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신고제로 완화○ 미수교국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진출절차 간소화- 미수교국에 대한 진출시 국무회의 심의 폐지	

건 설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1. 공원사업시행 허가 및 공 원 시설관리 허가권 하 부위임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사업 시행 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권 → 일정면적율 기준으 로 이원화 • 기준면적 이상 : 건설부장관 • 기준면적 미만 : 공원관리공단이 사장, 도지사 <p>—— 허가 기준 면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연면적 $500\ m^2$ • 토지 면적 $2,500\ m^2$ <p>○ 집행업무의 장관 관장으로 민원처 리의 효율성 저해</p>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건설부장관 권한을 국립공 원관리공단이 사장 및 도지사에게 일괄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공원법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2 . 공공용지 취득시 토지 평가 제도개선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농로는 인근토지의 1/2 이내로 평가 ○ 토지보상에 대한 형평성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사업 등에의 토지제공 기피 ※ 다수주민의 편리를 위해 선의로 제공한 토지가 다른 공공사업의 시행 토지로 사용될 경우 인근 토지가의 1/2 밖에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 야기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기준의 합리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 사업에 제공되기 전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 제 6조의 2 항 제 2항 제 3호
3 . 중기조종사 신상변동 신고제도 개선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조종사 신상변동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이내 신상변동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관리법 시행규칙

류 첨부 거주지 시 · 도지사에

신고 의무

- 거주지 이전시 신고의 이원화로
불편 야기
 - 신상변동신고 → 시 · 도지사
 - 전 · 출입신고 → 읍 · 면 · 동장

〈개선방향〉

- 읍 · 면 · 동단위에 신고 · 처리방안
강구

4. 도시공원

관리제도

개선

〈실태〉

— 도시공원 및 녹지지정 현황 —

- | | | |
|--------------------------------|----------------------|----------------|
| 〈도시공원〉 : 3,732 개소 670 백만 m^2 | | ○ 도시공원법
시행령 |
| ○ 토지 | 사유지 360 백만 m^2 | |
| | 국 · 공유지 310 백만 m^2 | |
| ○ 건축물 : 11,452 동 | | |
| • 주택 7,587 동 | | |
| • 종교용 448 동 | | |
| • 기타 3,417 동 | | |
| (학교, 복지시설 등) | | |

〈녹지〉 831 개소 51 백만 m^2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지정 이전 합법적 설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사업집행지연으로 주민생활에 불편 초래○ 시·군의 재정형편상 공원사업시행이나 토지보상이 미흡하여 공원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 지연으로 민원 야기○ 주요간선도로, 철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녹지에 진입도로개설이 허용되지 않아 건축이 불가할 뿐 아니라 주민통행 불편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결정 이전의 합법적인 기존시설물의 행위 완화○ 공원시설의 확대허용 및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공원사업 활성화○ 주택 등 건축시 시설녹지내의 행위 완화	

보건사회부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계법령
1. 의료보험 체계를 이용한 결핵 관리 개선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기관과 의료기관과의 상호 정보교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환자 초기검진과 발견에 애로 • 전염성 질병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 곤란 ○ 결핵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환자수의 59%인 47천명의 환자 미관리 <p>— * 결핵환자 현황 : 798천명(추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 전국 결핵실태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등록 관리 : 120천명 • 일반병·의원 등 진료 : 208천명 • 미관리 환자 : <u>470천명</u> 	○ 결핵예방법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유병가구 추적관리의 체계화 -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진료비 청구시 전산처리에 의한 결핵상병정보 도출 ○ 의료기관, 보험기관, 보건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망 구축 	
2. 의료용 방사선 장	<p style="text-align: center;">〈실 태〉</p>	
치 등의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용 방사선 장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대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진단용 및 일정용량이하의 치료용 → 방사선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보건의식 수준 향상 및 전국민 개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의료용방사선 이용 빈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노후화 · 진료의 부적정 등으로 인한 방사선 피해 가능성 증대 <p style="margin-top: 1em;">※ 의료용방사선 장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강구 필요</p>	

〈개선방향〉

- 의료용 방사선장치 및 관계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 의료용 방사선으로부터의 위해 방지
 -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건강 보호
- ※ “의료용 방사선장치 등의 안전관리 규칙” 제정

3. 직업보도
시설승인
및 설치
허가권
위임

〈실태〉

-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의 이원화
 -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 지방자치단체 : 보건사회부장관 승인
 - 공익법인 : 보건사회부장관 허가 (윤락행위방지법 제 9조)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 법인기타 비영리법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

○ 윤락행위
등방지법
○ 사회복지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 도지사 권한사항이나 위임 조치됨</p> <p>(사회복지사업법 제 2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9 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선기판의 업무 혼동 및 민원인 불편 야기 <p>〈개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락행위 방지법상의 “직업보도 시설의 설치허가권”을 시장, 군 수·구청장에 위임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일원화 	
4. 의료보호	〈실 태〉	
입원진료 기간 연장 승인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호대상자 입원기간 연장 절차 • 입원기간연장 승인 신청 : 진료 기관장 → 도지사 • 도지사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승인 (10 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 행규칙

- 원거리 거주 환자(또는 보호자)
가시·도까지 직접 왕래해야
하는 불편 및 부담 야기

〈개선 방향〉

- 입원기간 연장승인 결정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개선
 - 시·군·구에 의료보호심의위원
회 구성운영 방안 검토

5. 의료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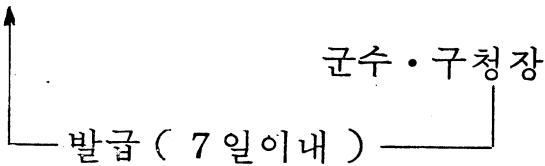
수첩 발급

절차 개선

〈실태〉

- 의료보호수첩 신규발급 및 기재
사항 변경 절차

- 대상자 → 읍·면·동장 → 시장·



○ 의료보호

법시행령

○ 주민등록

법

- 시간, 인력 낭비 및 수첩 발급기
간동안 진료차질 초래로 불편
야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호수첩 발급업무의 하부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 → 읍·면·동장 * 의료보호수첩 발급상황 통제·감독은 읍·면·동의 사후 보고로 해결 	
<p>6. 의료보호 카드 송부 절차간소화</p>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호대상자 주민등록 전출입 시 의료보호카드를 주민등록부 송부와 분리하여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부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전출지) → 읍·면·동(전입지)으로 직접 송부 • 의료보호카드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 시·군·구 (전출지) → 시·군·구 (전입지) → 읍·면·동 ○ 주민등록전출입기간보다 의료보호 	<p>○ 주민등록 법 ○ 의료보호 법시행 규 칙</p>

카드 이송기간이 과다하게 소요

- 의료보호카드 도착 지연에 따른 진료 불편 초래 및 민원 야기

〈개선 방향〉

- 주민등록송부시 “의료보호카드”

동봉 송부

- ※ 의료보호대상자 관리문제는 읍·

면·동의 전출입 상황보고로

해결

노 동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1. 최저임금 적용시기 변경	<p>〈 실 태 〉</p> <p>○ 최저임금 결정 · 고시 절차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후 최저임금안 고시 및 노사 단체 이의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11.30 까지 결정 · 고시하며, 다음 연도 1.1 부터 적용</p> <pre> graph LR A[노동부장관 심의요청 (매년 6.30 까지)] --> B[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심의 (90일이내)] B --> C[최저임금안 고시 및 이 의 제기 (30일이내)] C --> D[적용 (다음연도 1월 1일)] </pre> <p>○ 최저임금이 노사간 임금교섭시기 이전에 적용됨으로써 일반근로자의 임금인상 문제와 불가피하게 결부 되므로 불필요한 노 · 사분규 발생 의 우려가 있으며, 충계 임금교섭</p>	<p>○ 최저임금 법 제 8 조 및 제 10 조</p> <p>○ 동법시행 령 제 7 조</p>

시 사실상 임금인상의 선행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노사간 자율적인 임금인상 후에도 개선되지 못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책이라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함.

〈개선방향〉

- 최저임금심의기간 및 적용시기를 노사간의 임금교섭시기 이후로 변경
 - 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심의요청일 변경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변경
 - 최저임금 적용시기 변경

2. 산재보험

사무조합

제도개선

〈실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 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상시 300 인미만 (건설업은 200 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서

○ 산업재해

보상보험

법시행령

제 42 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 부터 매보험년도중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 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징수비용을 교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수비용교부기준<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교 부 금 액</th></tr></thead><tbody><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90 %이상 95 %미만 납부• 95 %이상 납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16인미만 사업체- 상시 16 ~ 30인미만 사업체- 상시 30인이상 사업체</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납부액의 1 %납부액의 5 %납부액의 3 %납부액의 1 %</td></tr></tbody></table>* 90 %미만 납부시에는 징수비용 미교부○ 현행 징수비용 교부금은 기초징수실 비가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	구 분	교 부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 %이상 95 %미만 납부• 95 %이상 납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16인미만 사업체- 상시 16 ~ 30인미만 사업체- 상시 30인이상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납부액의 1 %납부액의 5 %납부액의 3 %납부액의 1 %	
구 분	교 부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 %이상 95 %미만 납부• 95 %이상 납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16인미만 사업체- 상시 16 ~ 30인미만 사업체- 상시 30인이상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납부액의 1 %납부액의 5 %납부액의 3 %납부액의 1 %					

무조합의 영세사업체에 대한 보험

사무 조력 기피로

- 영세사업체의 보험료 납부 실적 저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5인 이상 전 산업 적용 확대에 따라 증가 되는 영세사업체 보험사무를 지방 노동판서 징수담당요원의 직접 처리로 업무량이 가중됨.

〈개선 방향〉

- 보험사무조합이 30인 미만 영세 사업체로 부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 납부하는 등 보험사무 조력시 현행 징수비용 교부금에 정액 보장금 가산 지급
 - 정액보장금 : 1개업체당 3,000 원

3.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치·운영
개선

〈실태〉

- '8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을 정하여 사업체에 권장 ('87.4월 근로복지향상을 위한 사내

○ 사내근로
복지기금
법(가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당기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부금의 한도내에서 출연 • 기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재산형 성지원, 생활 부조금 등에 사용 • 기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 협의회에서 관리 •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의 기금출연: 손금(필요 경비) 확정 - 근로자: 기금에서 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면제 ○ 기금의 설치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p>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 규제법, 상속세법, 증여세법</p>

않으므로 사업주의 호응없이는 기금
설치 곤란

- 기금이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이자소득세 납부로 인하여
근로복지 사용재원의 감소
- 사무실, 복지시설 등 부동산을 소유
할 경우 대표자 자연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어 대표자 변경시 상속·
증여세 납부문제 발생
- 기금설치에 대한 손금인정한계
(기부금을 포함하여 소득금액의
10%이내) 등 기존 복지후생제도
와의 중복 등으로 사업주가 기금
출연을 주저함.

<개선방향>

- 사내근로복지기금법(가칭) 제정
 - 기금재원
 - 기금을 당기순이익에서 일정
비율로 출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용도<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재산형 성지원, 근로자 생활원조 등으로 활용• 기금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노사 협의회에서 자율운영○ 세법상 혜택을 독립적으로 받도록 추진	

교 통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 계 법령
1. 택시운전기사 자격제 도입	<p><실 태></p> <p>○ 택시등 인명을 운송하는 주요한 공 익운수부문 종사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격인증제도 미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교통규칙위반 및 사고율 등 <p>※ 일반회사택시 운전자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21세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 • 운전정밀검사기준에 합격 • 운전자 교육과정 이수 <p>※ 개인택시 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사택시 운전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 연령 30세이상 • 사업용자동차 5년이상 또는 자가용 10년이상 무사고 경력 을 갖춘 자 <p>○ 서비스 직접 제공자인 운전기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대책 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 팽배 	<p>○ 자동차운 수사업법 시행령, 동법 시 행규칙</p>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 계 법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택시면허 처분관련 민원 과다 및 개인택시 면허 이권화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방향〉</p> ○ 택시운전기사자격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운전기사 기본자격 요건 강화 •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및 시험부과 — 지리, 교통 및 운수관련법규, 서비스등 교양 •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 연계검토 	
2. 이사화물운송 제도 개선	<p style="text-align: center;">〈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화물운송요금 및 이사화물의 분실 또는 파손에 따른 배상 문제로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화물운송은 자동차운송 알선업체가 “이삿짐센타”라는 임의명칭을 가지고 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 1,200여개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업종

<개선방향>

- 이사화물 전문취급 알선업체 육성을 위한 등록기준 강화
- 운임 및 요금산정기준 마련
- 소비자보호를 위한 피해보상제도 마련
 - 영업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 이사화물운송약관의 제정 시행으로 책임한계 명확화
- 이사화물운송차량 안전시설 확보
 - 탑차 확보 의무화 등

3. 개별화물 및 <실태>

- | | | |
|---------------------------------|--|---|
| 알선사업조합
의 시·도단
위조합설립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이 전국으로 광범위하여 지 도·감독 불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 각각 1개의 개별화물조합과 알선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조합에서 시·도별로 지부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및 동법 9조 |
|---------------------------------|--|---|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 계 법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의 설립인가는 교통부장관의 권한임. • 조합원수 <table border="1" data-bbox="473 579 1224 877"> <thead> <tr> <th data-bbox="473 579 743 691">조 합 별</th><th data-bbox="743 579 933 691">설립 당시 ('87.12)</th><th data-bbox="933 579 1108 691">현 재 ('89.12)</th><th data-bbox="1108 579 1224 691">증가율 (%)</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3 691 743 765">개별화물조합</td><td data-bbox="743 691 933 765">11,566</td><td data-bbox="933 691 1108 765">24,751</td><td data-bbox="1108 691 1224 765">114</td></tr> <tr> <td data-bbox="473 765 743 877">알선사업조합</td><td data-bbox="743 765 933 877">1,533</td><td data-bbox="933 765 1108 877">2,967</td><td data-bbox="1108 765 1224 877">93.5</td></tr> </tbody> </table>	조 합 별	설립 당시 ('87.12)	현 재 ('89.12)	증가율 (%)	개별화물조합	11,566	24,751	114	알선사업조합	1,533	2,967	93.5	
조 합 별	설립 당시 ('87.12)	현 재 ('89.12)	증가율 (%)											
개별화물조합	11,566	24,751	114											
알선사업조합	1,533	2,967	93.5											
4. 자동차이전등 록제출서류의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로 조합원간에 이해가 상이하여 단일조합으로 설립운영 곤란 ○ <개선방안> ○ 시·도별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설립권한을 시·도에 위임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근거법령인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부동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용도만을 기재토록 되어 있어 시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 록규칙 제 25 조 제 1 항 제 3 호 나목 												

- 자동차의 전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당사자간에 양도·양수(중고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경우 제외)하고, 이전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는 양수인의 주소, 성명이 기입된 것을 제출

〈개선방향〉

- 당사자간의 거래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에 양수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토록 한 조항을 삭제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5. 관광호텔의

〈실태〉

- 개선등록제도
 - 등급결정업무시 갱신등록의 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이를 각각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적 낭비 및 비능률 초래
 - 갱신등록과 관광호텔 등급결정을 매 3년마다 각각 실시

- 관광진흥법 제4조 제3항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심사업무에 포함처리 	
<p>6. 휴양콘도미니 업의 건전육 성</p>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양콘도미니업을 하자 하는자는 등록을 하기전에 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함. ○ 휴양콘도미니업의 운영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 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양콘도미니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당 행위에 대한 규제규정 불비, 유사 콘도업의 성행으로 사회적 물의야 기 우려, 공유제등에 대한 법적근 거 불비로 과행적 운영 우려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양콘도미니업의 공유제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운영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 규칙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자의 부당행위 규제 법적근거 및 벌칙 마련
- 유사콘도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7. 여행업의 영업소개설 및 변경신고 구비서류간소화 <실태>

- 여행업 등록갱신 및 영업소 개설변경신고 신청
 - 사무실 사용권을 확인하기 위한 구비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 등본
 -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여 정당한 계약이 체결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 한 것으로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제5조, 제6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가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인 경우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수 없어 행정처리에 곤란</p>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업등록 신청서류중 사무실 사용권을 확인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부동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8. 관광종사원 교육연수기관 의 지정권한 위임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교육 수요부족 및 무실적으로 일부 관광종사원 연수기관의 지정 의의 상실 ○ 지정 연수기관에 대한 편중시비 상존 <p>※ 관광종사원교육 위탁실시를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관광종사원 연수기관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 5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41 조

- 연수기관의 분류 : 일반연수기관, 사내연수기관, 전문교육기관

<개선방향>

- 일반 및 사내 연수기관에 대하여는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

9. 민항공기 비행장주변지역 <실태>

- 격증하는 항공수요 증대에 따른 비행장시설 확충으로 인한 소음지역의 추가발생 및 확산

○ 비행장주변의 항공기 소음대책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소음피해지역 (김포공항)

- 서울시 : 강서구 (공항동),

양천구 (신월동)

- 경기도 : 부천시 (고강동, 오쇠동)

김포군 (김포읍, 고촌면)

- 인천직할시 : 계양동등 일부지역

- 소음공해로 인한 서면진정, 집단시위, 면담등 빈번한 항의가 있으나 근거 법령 미비 (건축규제)로 민원해소 곤란

- 집단이주단지조성 분야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 계 법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옥 및 토지는 인근지역 거래가 보상-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세입자 이주대책 등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기 소음피해지역내의 가옥매입 보상, 이주대책 수립등 민원해소- 건축규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철 도 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1. 운전업무전산 화제도 개선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명령, 운전정보등의 기록 및 확인교양 숙지시간 파다 (사업전 약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취급관계 지시사항 전보처리 • 동력차승무원의 승무조건 및 지시사항 계시 전달 • 운전관계 운용 및 통계업무의 철야 수작업 ○ 긴급 운전명령사항의 이행 및 처리 곤란 (전보 운용시간 약 1~2시간) ○ 운전취급관계 운용 및 통계업무의 처리시간 파다, 촉발생 우려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분야 별도 전용전산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관리업무의 과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관계 지시명령의 ON-LINE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취급 규정 ○ 동력차승무원 지도운용 규정 ○ 열차운전 기관사 보고절차 ○ 운전용 연료운용 규정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차승무원의 피로도 경감으로 안전운행 확보 — 동력차승무원 관리 및 운전지도 업무 — 운전관계 통계업무 • 본청 - 지방청 - 기관차사무소간 지시 및 보고업무의 간소화 • 각종 보고 및 서식 생략 — 기관사수첩 — 열차운전사업 실적표 — 연료 인계권 — 승무원 출무 및 적합성 검사표 — 운전지시 전달표 — 운전시행 총괄부 및 역전기록부 — 기타 운전관계 통계서식 	
2. 승차권 연중 예매제도화	< 실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차권 구입을 위한 장기간 대기 불편 ○ 매표질서 혼잡 	○ 국유철도 여객운송 규칙

- 승차권 조제등 업무량 과다

* 승차권 예매일

- 대상승차권 :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 통일호 : 10일전

- 대수송시 : 20일전

- 승차권 발매방법

[평상시 : 전산발매
대수송시 : 전산, 수작업 병행

발매

<개선방향>

- 승차권 연중예매 (장기예매)

→ 승차권 구입불편 해소

- 대상승차권 :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 평상시 : 3개월전

- 대수송시 : 추석 6개월전,

설날 4개월전

- 승차권 발매방법

- 전산발매 및 전화예약 병행

- 시행일 : '90.8.1부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 계 법 령
3. 철도운송제도 개선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법인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과 내무부령 내용이 상위되어 화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화약류 운송에 대한 철도운송규정 제 42 조 (화약류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갑종: 화약, 폭약, 화공품 제 43 조 (화약류적재) 화약류 탁송시 24시간전 신고 제 47 조 (화약류적재) 화차 적재량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기타 용어 미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판, 혁포, 총용실포, 총용공포등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모법 및 부령과 일치시켜 화주의 불편 해소 • 화약류에 대한 철도운송규정 (대통령령 제 11681 호, '85.4.18)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송 규정

- 제 42 조 (화약류 범위)
 - 1. 화약 2. 폭약 3. 화공품
- 제 43 조 (화약류 탁송)
 - 화약류 탁송시 4시간전 신고
- 제 47 조 (화약류 적재)
 - 화차 적재량의 80% (의장의 중량 포함) 을 초과할 수 없다.
- 기타 용어 순화
 - 나무판, 가죽포대, 실포, 공포 등

4. 고정자산회계 <실태>

- | | | |
|-------------|---|---|
| 처리 온라인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 변동사항 및 현황이 2개 월후에 산출 ○ 재산관리관 소속에서 직접 입력하지 아니하므로 오류사항 발생시 대조확인등 번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사업 특별회계 사무처리 시행세칙 |
|-------------|---|---|
- 23개 재산관리관 소속에서 고정자산 회계처리 (취득, 처분) 사항 월별 집계, 전자계산사무소에서 일괄 전산입력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 계 법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력리스트 재산관리관 소속에서 판계증빙과 대사확인, 오류사항 전 자계산사무소에서 수정입력 <p>〈개선방향〉</p><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자산 회계처리 온라인 실시• 고정자산 회계처리 (취득, 처분등) 사항을 각 재산관리관 소속에서 단말기에 의하여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입력<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 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컴퓨터 : Prime-9955 전용• 단 말 기 : 23 개 재산관리관 소속에 설치• 시스템개발 : 전자계산사무소• 시 행 : '90.10 월 예정- 재산변동사항 신속 파악- 재산회계처리 일일결산체제 확립	

5. 디젤기관차 검수기준 및 세부작업지침 서 제정	〈실태〉	○ 디젤기관 차검수규 정
	○ 현행 디젤기관 검수규정(청훈령)은 포괄적 규정으로 세부적, 구체적 검 수기준 미비	
〈개선방향〉		
○ 현행 디젤기관차의 검종별, 계통별 세부검수 개소별 작업지침서 제정 - 체계적 책임검수 및 정밀검수 시행 - 검수종사원의 기술습득 지침서 역 할 수행		

해 운 항 만 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 계 법령
1. 면허사업내인 가제도 도입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관련 면허사업 내인가 근거규정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불편 • 행정의 안정성 및 능률성 미흡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사업 내인가제 근거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등 확보기간 및 사업개시 의무 - 내인가 조건위반시 행정처분등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법 ○ 항만운송사업법
2. 항만운송사업 양도, 양수제 도 개선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운송사업 양도, 양수시 해운항만 청장의 인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양수시 인가신청 기한에 관한 규정 미비 • 양도, 양수에 대한 정부규제 과다 및 기업의 자율성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운송사업법 제 23 조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양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양도, 양수신고기한 명시 	
3.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제 도 개선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기사 면허증 소지자 권리보장 미비 및 취업기회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 : 5년 • 유효기간내에 면허갱신 요건을 갖추어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실효 	○ 선박직원 법 제 7조 및 제 8조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 유효기간내 면허갱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기사면허증에 대하여 효력정지로 개선 	
4. 해기사면허 요건 완화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기사 시험합격후 미달경력 구비시한으로서 1년은 너무 짧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기사면허시 해기사시험 합격후 미달경력 구비시한 : 1년 	○ 선박직원 법 제 5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기사시험 합격자의 권한미흡 및 취업 불안정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기사시험 합격후 미달경력 구비시 한 연장• 1년 → 2년	
5. 해기사면허 취소사유축소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직무와 관련없는 법률위반을 해기사 면허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등 과도한 규제• 해운항만청은 다음의 경우 면허취소, 1년이내의 업무정지 가능<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직원법(에 의한 명령) 위반시- 직무수행시 비행이 있을 때- 관세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시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기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 선박직원법 제9조

- “관세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해기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규정 삭제

6. 해기사결격 <실태>

사유축소개선

- 협집행종료자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 정상적인 사회활동 복귀 및 기본권 보장미흡
 - 현행 해기사 결격사유
 - 18세 미만인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선방향>

- 해기사 결격사유 축소

○ 선박직원
법 제 6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도 종전과 달리 해기사면허 가능토록 개선</p> <p>→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종전과 달리 해기사 면허 가능토록 개선</p>	

체 신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법령
1. 단파대 선박전화 반복신방식 허용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의 공중통신용 단파대주파수는 복신방식의 무선기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선박의 공중통신은 KTA중앙전신국의 해안국을 통하여 공중통신망과 연결 사용 ○ 소형선박등은 경제적이 유등으로 반복신기기를 탑재하고 있어 공중통신 이용 불가능 ○ 원양어선등 장기적으로 해상조업을 하는 경우 공중통신 이용이 불가능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신방식의 선박국에도 공중통신용 주파수 사용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지정기준 개정 ○ 공중통신용 해안국 운용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파대 주파수의 운용시간 연장 	○ 행정지침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2. 시민무선국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전화 운용 요원 보강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국은 출력이 극히 미약한 것 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아 사용 하여야 함. ○ 무선국은 법인·사업자등에 허가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 으로 허용 ○ 외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선국 이용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국내제도 없음. ○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무전기 이용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개인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이용제도가 없음. ○ 외국의 시민무선국용 기기가 국내 유입되어 불법운용되고 있어 이의 현실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시민무선국용 기기가 국내에서 생산 수출되고 있으므로 국내시판이 가능하도록 허용 필요

〈 개선 방향 〉

- 일정 요건을 정하고 동 요건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용을 자유화 함.
- 허용재원 및 형태, 형식검정, 무선 국운용방법, 불법무선국의 감독등 허용방안 수립 시행
 - 전파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

3. 공중 FAX의

〈 실 태 〉

활성화

- FAX의 타인사용 제한

○ 공중전기

- 일반인이 FAX를 이용할시 우체국 또는 전화국 방문 이용

통신사업

- 우체국, 전화국 방문 이용의 불편

법시행령

제 44 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점·문방구등 일반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의 일반 FAX 설치자에게도 타인사용을 허용 	
4. 제 3 종 우 편물 견본 제출 완화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법시행규칙 제 26 조에 의거 제 3 종 우편물 인가자는 매발행정일마다 견본 2부를 관할 우체국을 거쳐 체신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 견본제출 부수를 2부로 하여 필요이상의 견본징수로 민원야기 • 관할우체국을 거쳐 체신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일선우체국의 업무량 증가 및 우편물량 증가와 체신청 업무의 과중 초래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 종 우편물 인가자는 매발행정일마다 견본 1부를 관할 우체국에 만 제출하도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법 시행 규칙 제 26 조

서울특별시

과제명	실태 및 개선방향	관계법령
1.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업무 개선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담배소매소지정권 : 구청장에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소 지정위한 시설·거리 등 현장조사권 : 한국담배인삼공사 - 소매소지정권자인 구청장의 현장 조사권 부재로 지정업무처리의 불공정, 불합리성 내재 - 지정을 위한 한국담배인삼공사 와의 업무 협조절차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소매소지정에 관한 현장조사등 제반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2.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p>〈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수도전으로 영업용수도와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율이 높은 영업용요금부과 - 가정용 수도사용가구의 영업용 요금부담으로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 15톤까지 가정용 요율 적용 	
3. 주민등록 신규등록시 통장 경유 제 폐지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신규등록시 신고서에 통장 확인 날인후 접수 • 통장의 확인은 주민등록과 통적부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나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만 초래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의 확인, 날인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에서 신고서 접수·공부 정리후 등록 내용을 통장에게 통보 	○주민등록 법 시행 령
4. 병역동원 훈련 소집시 여비지급 제도 개선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에 의한 병역동원훈련소집시 여비, 식대를 구청 민방위과에서 개별 지급 • 여비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구청에 	○병역법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계 법령
	<p>별도 방문함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불편 초래</p>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에 여비지급 통지서를 첨부하여 인근 우체국에서 환금하도록 함. 	
<p>5. 재외국민 인감 서면 신고 개선</p>	<p>〈실 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신고시 본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신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신고시에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2인 연서 - 해외 장기거주자의 경우, 증명 청에 인감 신고한 성년자 2인 보증 곤란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청에 인감신고한 성년자 2인의 보증곤란시 타 증명청에 신고한 자도 보증허용 	<p>○ 인감증명 법</p>